

“14 차 5 개년”의 시작, <정부업무보고> 재세정책 살펴보기

2021 년 3 월

Issue 6

개요

2021 년 3 월 5 일,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은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 4 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하며, 2020 년 정부 업무와 “13 차 5 개년(13.5)”시기의 중국 경제 사회 발전 성과를 회고하고, “14 차 5 개년(14.5)”시기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1 년 중점 업무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2020 년 사상 초유의 충격을 직면한 상황에서 시장 주체의 시급한 수요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계적 감세/비용감면을 시행하고, 제도적 플랜과 결합하여 시장주체를 위해 연간 2 조 6 천억 RMB 에 달하는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그 중 사회보험료 감면액은 1 조 7 천억 RMB 로, 가장 직접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중소/영세기업과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뉴스플래시에서 PwC 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의 주요 재세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의 Insight 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제도적 감세정책 지속, 새로운 구조적 감세 조치 시행

개체공상호, 소규모납세자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재정부, 세무총국은 연이어 2020 년 13 호 공고와 2020 년 24 호 공고를 발표하여 호복성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를 면제하고, 호복성 이외 다른 성의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해 1%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했으며, 예납증치세 항목도 징수율을 낮춘 바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이미 2020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보고>는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혜택 등 일부 단계적 정책의 집행 기한 연장을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연장 기한은 후속적인 재세정책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 년 이래, 중국은 소규모납세자와 소형영세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혜성 세수감면정책을 시행했습니다²:

- 월매출 10 만 RMB(분기매출 30 만 RMB)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해 증치세 면제

- 소형영세기업 소득세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즉 연간과세소득액 중 100 만 RMB 미만인 부분에 대해 25%로 과세소득액 계산, 20% 세율로 기업소득세 납부(즉, 실제 세율 5%). 연간과세소득액 중 100 만~300 만 RMB 구간에 대해 50%로 과세소득액 계산, 20% 세율로 기업소득세 납부(즉, 실제 세율 10%). 또한 소형영세기업 적용요건 추가 완화.

<보고>는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기산점을 월매출 10 만 RMB 에서 15 만 RMB 로 높였으며, 소형영세기업 및 개체공상호 연간과세소득액 중 100 만 RMB 미만인 부분에 대해 현행 혜택 정책의 기초 위에 다시 50% 감면하여 소득세를 징수(즉, 소형영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실제세율을 5%에서 2.5%로 인하)하도록 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줄여주고, 시장 주체의 원기 회복과 활력 증대를 도왔습니다.

취업우선정책 지속적 강화, 재세/금융 정책적 지원 제공

“6 대 안정(취업, 금융, 무역, 외자유치, 투자, 경기예측)” 작업을 착실히 하고, “6 대 보장(취업,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망 안정, 기층조직 운영 보장)”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첫번째에 두었습니다. 고용안정 및 고용확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연이어 <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는 실업보험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9]23 호), <기업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20]11 호)를 발표했으며, 각 지역 또한 자체적 여건에 따라 사회보험료 감면, 실업보험 환급 등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보고>는 실업보험 및 상해보험 비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실업보험 환급 등 단계적 일자리 안정화 정책의 혜택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취업우선정책의 지속적 강화조치는 기업의 고용 안정화 및 확대를 지원/장려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민생보장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세혜택정책으로 기업 과학기술 혁신 지원, 제조업 발전에 도움 제공

최근, 재세부문은 R&D 비용 세전가산공제율 확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R&D 비용 세전가산공제율 확대, 기업 위탁 해외 R&D 비용 세전가산공제를 포함한 여러 혜택 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장려했습니다. 재세[2018] 99 호문에 따르면, 기업의 R&D 활동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R&D 비용 중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는 부분에 대해 실제 공제액을 기준으로 다시 실제 발생액의 75%를 세전가산공제하고 무형자산을 형성한 부분에 대해 무형자산원가의 175%를 세전 상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이미 2020 년말 만료되었습니다.

<보고>는 기업 R&D 비용 75% 가산공제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제조업회사 가산공제율을 100%로 인상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R&D 비용 가산공제 조세혜택정책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적극성을 향상시키고, 과학혁신기업, 제조업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9 년 4 월부터 중국은 모든 산업에 대해 증치세 미공제세액 증가분 환급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미공제세액 환급의 조건과 환급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부, 세무총국은 2019 년 84 호 공고를 발표하여 일부 선진제조업 납세자(비금속광물제품, 통용설비, 전용설비 및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4 대 산업 포함)에 대한 환급 신청 조건과 환급율을 추가 완화했습니다. 즉, 조건에 부합하는 상기 선진제조업납세자는 2019 년 6 월부터 월별로 증치세 미공제세액 증가분을 전액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선진제조업회사의 월별 증치세 미공제세액 전액 환급을 다시한번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선진제조업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선진제조업의 범위가 2021 년에 확대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에너지/물 절약 소득세 조세혜택 목록 범위 확대

현행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규정된 환경보호, 에너지/물 절약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에너지/물 절약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전용설비의 투자액에 대해 기업은 전용설비투자액의 10% 만큼 당해년도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혜택 정책 향유 시, <환경보호, 에너지/물 절약 항목 기업소득세 혜택 목록(시행)>,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혜택 목록(2017 년판)>, <에너지/물 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혜택목록(2017 년판)>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보고>는 환경보호, 에너지/물 절약 등 소득세 혜택 목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신형 에너지절약 환경보호기술/장비/제품의 연구개발 응용을 촉진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업이 목록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조세 정책이 중국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비용 혜택 정책 향유 처리 절차 간소화

“13 차 5 개년(13.5)”시기 이후, 세무시스템은 “放管服(放管服)”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조세 환경을 최적화 하며, 각종 혜택 비안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기업소득세 혜택 향유, 비거주자납세자의 협정대우 향유 등 관리방법이 모두 이미 “비안제(备案制)”에서 “비사제(备查制)”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는 재세 금융 체제 개혁 심화를 언급하며, 세금비용 혜택 정책 향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2021 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캠페인”³에서도 조세혜택정책 자료에 대한 비안제→비사제 변경 범위 확대,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即征即退), 선징수후환급(先征后退), 가산공제 및 자연인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혜택 비안을 전부 자료보존비치제(비사제)로 변경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 정책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처음으로 증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며, 이후에는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2020 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와 세계 경제의 깊은 불황 등 여러 큰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은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총괄하며 기업구제와 활성화를 도와 세계 주요 경제실체 중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21 년은 “14 차 5 개년(14.5)”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이자 현대화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첫해입니다. 올해의 <보고>는 거시적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재세 정책으로 퀄리티와 효율을 높이며, 세금감면 정책의 최적화 실행을 요구하고, 시장주체의 재난지원활동과 활력증강작업을 지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1 년의 재세 업무 중점은 안정 중 혁신 추구가 될 것입니다. <보고>는 전체적인 “14 차 5 개년(14.5)” 계획의 주요 목표 임무를 살펴보면, 현대 재세 금융 체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조세 측면에서 볼 때, 현대화 조세제도 개념은 2020 년 10 월 발표된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 14 차 5 개년 계획 및 2035 년 전망 목표 제정에 관한 제언>⁴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현대 조세제도 개선, 지방세 개선, 직접세 체계, 조세구조 최적화, 직접세 비중의 적절한 제고, 조세 징수관리제도 개혁 심화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출항하는 중국의 조세제도 개혁은 더욱 안정적인 것이라 기대됩니다.

“13 차 5 개년(13.5)”시기 이래 중국은 조세법정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조세입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연이어 환경보호세법, 담배세법, 향만선박톤세법, 경지점용세법, 차량구입세법, 자원세법, 계세법 및 성시유호건설세법을 발표했습니다. 2020 년말까지 현행 18 개 세목 중 이미 11 개 세목이 입법 작업을 마쳤습니다. 인화세법 초안 또한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처음 상정되었으며, 2021 년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는 재세정책 이외에도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추가 축소,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역 증설,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제정, 내외자기업 공평경쟁 촉진, 외자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 양자/다자간 지역경제 협력 심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 발효 추진, 중국-유럽 투자협정 체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진행 가속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국내대순환(내수)을 주축으로 하여 국내(내수)/국제(수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국면에서 “14 차 5 개년(14.5)”이 시작되는 해의 정부업무보고는 중국이 더욱 개방된 국내/국제 쌍순환을 실시하고, 외자법률제도 보완을 통해 외자의 시장진입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외국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중국도 국제무역협력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무역투자 자유화/편리화를 촉진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주석

1. 2021 년 정부업무보고
<http://www.gov.cn/zhuanti/2021lhzfzbg/index.htm>
2. 재정부, 세무총국 소형영세기업 보혜성 조세감면정책 실행에 관한 통지 (재세[2019]13 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22674374/content.html>
3. 국가세무총국 2021 년 “납세자/납부자 실무 편의를 위한 캠페인” 진행에 관한 의견 (세총발[2021]14 호)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c101434/c5161749/content.html>

4.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 14 차 5 개년 계획 및 2035 년 전망 목표 제정에 관한 제언
http://www.gov.cn/zhengce/2020-11/03/content_5556991.htm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나상원 **Partner** (86) (21) 2323-2625 sang.won.la@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김도현 **Director** (86) (10) 6533-3596 dh.kim@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태정 (86) (10) 6533-5733 taejeong.t.you@cn.pwc.com
(TP) 박영인 (86) (10) 6533-3891 young-in.y.park@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Directo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정자현 (86) (21) 2323-8879 jaheon.j.jeong@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소주 (회계감사 & Tax) 황홍석 (86) (512) 6273-1850 hongseok.h.hwang@cn.pwc.com
광주 (회계감사 & Tax) 박길수 (86) (20) 3819-2503 gilsoo.p.park@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Advisory) 한승희 **Partner** (86) (21) 2323-3167 jennifer.s.han@cn.pwc.com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2021年3月8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1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